

1.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조정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2명(5급 1명, 6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고, 국가병상 동원 전략 수립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을 존속기한 만료에 따라 감축하며,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하여 질병관리청에 증원한 한시정원 1명(5급 1명)의 존속기한을 2022년 9월 11일 까지에서 2023년 9월 11일까지로 1년 연장하는 내용으로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00000호, 2022. 00. 00. 공포·시행)가 개정됨에 따라 변경되는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임.

2. 참고사항

- 가. 관계법령 : 생략
- 나. 예산조치 : 2022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
-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2022. 8. 00. ~ 8. 00.)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보건복지부령 제 호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1항 및 제2항을 각각 삭제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2022년 9월 11일”을 “2023년 9월 11일”로 한다.
별표 12를 별지와 같이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2]

질병관리청과 그 소속기관 공무원 한시정원표(제32조 관련)

1. 제32조제3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3년 9월 11일)

총계	1
일반직 계	1
행정사무관 · 식품위생사무관 · 약무사무관 · 의료기술사무관 · 의무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

2. 제32조제4항 관련 한시정원(존속기한: 2022년 12월 31일)

총계	2
일반직 계	2
수의사무관	1
수의주사	1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32조(한시정원) ① 보건의료 연구개발의 총괄·조정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2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또는 약무사무관 1명, 행정주사 · 사회복지주사 · 보건주사 · 전산주사 또는 약무주사 1명)은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제32조(한시정원) <삭 제>
② 국가병상동원 전략 수립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2년 9월 11일까지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 · 사회복지사무관 · 보건사무관 · 전산사무관 · 약무사무관 · 시설사무관 또는 공업사무관 1명)은 보건복지부	<삭 제>

<u>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u>	
③ 의약품·물자 등의 수급을 위해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u>2022년 9월 11일까지</u> 별표 12에 따른 한시정원을 질병관리청에 두며, 별표 12의 정원 중 1명(행정사무관·식품위생사무관·약무사무관·의료기술사무관·의무사무관·전산사무관 또는 수의사무관 1명)은 식품의약품안전처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해야 한다.	③ ----- ----- ----- --- <u>2023년 9월 11일</u> --- ----- ----- ----- ----- ----- ----- ----- -----.
④ (생략)	④ (현행과 같음)